

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노동복지과

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
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추은희 의원 외 12명

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추은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4. . .

발의자: 추은희 · 강승수 · 김민성 · 김영길
김영태 · 김재우 · 박세채 · 신용하
이상호 · 이정희 · 이지연 · 장미경
허민근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성 등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심의(안 제9조~제10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 제4조의3

나. 부서검토: 노동복지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라. 기 타: 없음

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실태조사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,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,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, 그 결과를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력체계 구성 등)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관내 고용노동지청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, 사업주단체,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

다.

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2. 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·업종별 실태 자료수집·분석
3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·업종별 대책
4. 사업주, 근로자,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
5.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
6.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·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
7.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
2.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·연구
3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
4.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
5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
6.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
7. 산업재해 관련 법률·의료 등에 관한 상담

8.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
 9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, 보호구,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·장비 등의 구입, 보수사업
 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)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산업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산업안전보건지도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
2. 기업체,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·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
3.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

③ 산업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
2.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
3.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
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
④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
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)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
2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) 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③ 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
2.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노사민정협의회 심의)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1. 실행계획 수립

2.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

3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검 토 의 건 서

부서명 : 노동복지과

조 례 명	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
☐ 검토 사항 ○ 근거 법령 ▪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▪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☐ 주요 사항 ○ 조례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~제2조) ○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성 등(안 제3조~제4조) ○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(안 제5조~제6조) ○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(안 제7조~제8조) ○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심의(안 제9조~제10조) 법령 ☐ 검토 결과 ○ 지방자치단체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3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바, ○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지원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☐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○ 기대효과 :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○ 소요예산 : 해당없음 ○ 문 제 점 : 해당없음	

[별지 제2호서식]

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4조(협력체계 구성 등), 제6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, 제7조(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), 제8조(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.

4. 작성자

- 노동복지과 행정7급 박현정(054-480-6207)